

정책연구 2017-62

# 세종시 투자진흥기금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Promotion Plan of Investment Fund in  
the Sejong City

김 성 표

**연구책임**

- 김성표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정책연구 2017-62

## 세종시 투자진흥기금 활성화 방안

발행인 박재묵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0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나은문화사 TEL 042-252-4103 FAX 042-252-410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 요약 및 정책건의

## ■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 지역의 투자유치는 주로 역외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저성장 시기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
  -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역의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지역 간의 기업유치 경쟁도 갈수록 심화
- 급속한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은 제조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가져왔으며 4차 산업혁명의 대두는 제조업과 IT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새롭게 하고 있음.
  -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작아졌으며 새로운 기술과 결합한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 생겨나기 때문에 첨단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는 지속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예상
- 세종시의 경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진흥기금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 제기
  - 투자진흥기금이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 따라서 세종시 투자진흥기금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 투자진흥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분석 필요

## ■ 연구 방법

- 문헌검토를 통해 투자유치에 대한 개념과 투자유치 정책에 대해 분석
- 광역자치단체 투자유치 관련 조례 분석을 통해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방안, 지원한도 등에 대해 검토

- 세종시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자료 분석으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분석
-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전문가 및 투자진흥기금 담당자와의 심층 면접을 통한 과제 발굴

## ■ 연구결과

### □ 세종시 투자진흥기금의 구성과 운영

- 세종시 투자진흥기금은 2013년에 조성되어 현재 365억 원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음.
  - 2014년에 첨단산업단지 SPC출자에 2억 원 지출
-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조건이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고 지원분야도 한정적
  - 국내기업의 경우 투자액 100억 원 또는 상시고용 30명 이상이며, 고용 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음.

### □ 투자진흥기금 활용도가 낮은 것에 대한 원인

- 투자진흥기금은 조성 중인 단계
  - 2013년에 기금 마련이 시작되어 현재도 기금은 조성 중인 단계
-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낮은 것으로 분석
  - 2016년 신규 산단 입주기업에 태양광발전저리용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청기업이 저조하여 활용되지 못함.
- 다른 보조금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부와 세종시에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순수 시비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 투자진흥기금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

### □ 투자진흥기금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단계적 접근 필요

- 투자진흥기금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활용되도록 유도

- 투자의 양적인 측면과 함께 질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프로젝트별로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춘 패키지 형태로 제공
- 유사한 인센티브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함께 일관성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
- 투자진흥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비용 대비 편익을 확대
  - 입지보조금에서 토지매입비를 축소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
  - 투자진흥기금을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에 반영
- 단계별 계획을 통해 투자진흥기금의 활용성을 제고
  - 단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수요를 반영한 토지 매입과 유치지역 구성에 맞는 투자유치를 견인, 투자유치 기본계획 마련 필요
  -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고용과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확대

#### □ 투자진흥기금 활성화 방안

- 기금조성의 주요한 목적인 세종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미래 투자수요를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 측면에서 활용도를 높여야 함.
  - 향후에 발생할 외국인 투자, 공공기관 및 기업 수요, 창업기업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선제적인 기반 마련 필요
  - 기금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분야를 확대하여 기금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사업을 구상하여 기업수요 맞춤형 사업 전개 필요

### ■ 정책건의

#### □ 산업입지 수요에 대비한 선제적 기반 조성

-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벤처창업단지, 창업투자기금, 청년창업 지원 등을 통해 창업생태계 기반 마련
-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여 외국계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 지원
  - 산업단지 내에 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외국계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
- 세종시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성장잠재 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집적할 수 있는 공간 선점
  - 성장 가능한 지역의 토지를 선점하여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 검토
  - 현재는 이전기업, 신규투자기업, 증설 투자기업(3년 이상 제조업),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해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검토 필요
-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금의 지원대상의 조건을 완화
  - 투자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이 이전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원조건 완화 필요

#### 기업의 인력 고용과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역 기업의 인력 고용과 교육훈련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 강화
  -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설하여 중앙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 지원

#### 기업수요 파악과 투자진흥기금 홍보 강화

- 기업들의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업들이 투자진흥기금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홍보서비스 등 기금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차 례

1장 서론 .....	3
1. 연구 개요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4
2장 투자 인센티브와 세종시 투자유치 관련 현황 분석 .....	9
1. 투자 인센티브의 개념 및 종류 .....	9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10
3. 광역자치단체 국내기업유치 지원보조금 .....	14
4. 세종시 투자유치 관련 현황 .....	23
5. 세종시 투자진흥기금 개요 및 현황 .....	27
6. 사례 분석 .....	31
7. 분석결과 .....	33
3장 세종시 투자진흥기금 활성화 방안 .....	39
1. 기본방향 .....	39
2. 세부전략 .....	41
3. 제안사업 .....	42
4장 결론 및 정책제언 .....	53
1. 결론 .....	53
2. 정책적 제언 .....	54
참고문헌 .....	56

부 록

부록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 57

부록 2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 65



## 표 차례

[표 2-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요 .....	11
[표 2-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현황(2013년도) .....	12
[표 2-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현황(국비사업) .....	12
[표 2-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현황(순시비사업) .....	13
[표 2-5] 광역자치단체 국내기업유치 지원보조금 유형 .....	14
[표 2-6] 대전시, 부산시, 세종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요건	21
[표 2-7] 대전시, 부산시, 세종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방안 및 한도	22
[표 2-8] 세종시 사업체수 추이 .....	23
[표 2-9] 세종시 종사자수 추이 .....	24
[표 2-10] 세종시 공장등록 추이(2014년도-2017년도) .....	25
[표 2-11] 전국 및 세종시 신설법인 추이(2013년도-2017년도) .....	25
[표 2-12] 세종시 산업단지 분양 현황(2017년 9월) .....	26
[표 2-13] 세종시 산업단지별 분양 현황(2017년 9월) .....	26
[표 2-14] 세종시 투자진흥기금 지원 조건 및 내용 .....	28

## 그림 차례

[그림 2-1] 대전시 기업유치 보조금 변경 내용 .....	32
[그림 3-1] 공공시설·기업 집적단지 이미지 및 공간구상 .....	45
[그림 3-2] 도시첨단산업단지 업종별 배치도 및 위치도 .....	46
[그림 3-3] 세종시 투자진흥기금 개선 방안 .....	49



# 1장

## 서론

1. 연구 개요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장 서론

## 1. 연구 개요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에서 투자유치는 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는 시기에 역외기업의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져 왔음.
  - ‘투자유치=기업유치=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요성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 간의 기업유치 경쟁도 더욱 심화
- 기술수준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성장은 제조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가져옴.
  - 우리나라가 지난 70~80년대 경험했던 제조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창출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고 있는 제조업의 혁신으로 여전히 제조업의 유치는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
- 서비스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중요성 부각
  -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한계와 경제발전은 IT, 금융, 문화, 행정, 연구, 비즈니스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에 대한 유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 세종시 투자진흥기금이 2013년부터 조성되어 운영 중이지만 기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세종시 투자진흥기금은 2013년부터 조성되어 운영 중이나, 실질적으로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금이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따라서 세종시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투자진흥기금의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향후 개선 방안 도출 필요

## 2) 연구 목적

- 첫째, 세종시 투자진흥기금의 현황과 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 파악
- 둘째, 유사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종시 투자진흥기금 운영 방안 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셋째, 세종시 투자진흥기금의 장기적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유도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연구의 범위는 세종시 투자진흥기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투자진흥기금의 정의와 관련 정책동향을 포함
  - 투자진흥기금의 정의와 관련 정책 동향
  - 세종시 투자진흥기금 현황 분석
  - 타 자치단체 투자진흥기금 사례분석
  - 세종시 투자진흥기금 활성화 방안과 제도개선 사항
- 기금 운영 체제, 조례 등에 대한 분석

### 2) 연구 방법

- 문헌검토를 통해 투자유치에 대한 개념과 투자유치 정책에 대해 분석
- 광역자치단체 투자유치 관련 조례 분석을 통해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방안, 지원한도 등에 대해 검토
- 세종시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자료 분석으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

## 한 분석

-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전문가 및 투자진흥기금 담당자와의 심층 면접





## 2장

### 투자 인센티브와 세종시 투자유치 관련 현황 분석

1. 투자 인센티브 개념과 종류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 광역자치단체 국내기업유치 지원보조금
4. 세종시 투자유치 관련 현황
5. 세종시 투자진흥기금 개요 및 현황
6. 사례 분석
7. 분석결과



# 2장 투자 인센티브와 세종시 투자유치 관련 현황 분석

## 1. 투자 인센티브의 개념 및 종류

### 1) 투자 인센티브의 개념

- 투자 인센티브는 정부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기업 또는 기관의 수익률 제고, 비용 절감, 위험 축소 등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으로 정의
  - 넓은 의미에서는 정부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의미하며 재정적 지원과 인프라 확충, 법제도정비, 규제 개선 등의 정책적 지원을 포함<sup>1)</sup>
  - 좁은 의미에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기업의 신설, 인수, 확장, 관리, 증설 투자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인 지원으로 한정<sup>2)</sup>

### 2) 투자 인센티브의 종류<sup>3)</sup>

- 투자 인센티브는 조세 인센티브(fiscal incentive), 재정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 기타 인센티브(시장 편의, 규제완화 등)로 구분 가능

#### 조세 인센티브

- 조세 인센티브는 조세체계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자본 투자 및 채투자 세액 공제, 수출입 관련 관세 면제, 기타 세금(판매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감면 등으로 구성

---

1) 박재곤(2010)

2) UNCTAD(2004), p.15에서 인용하여 재구성

3) 박재곤(2010)에서 인용하여 재구성

- 조세 인센티브는 법률에 기초하고 있어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제공되며 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수단으로 사용

## □ 재정 인센티브

- 재정 인센티브는 주로 직접적인 투자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 신용보증, 지분참여, 보험가입 우대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자금조달과 마케팅 등 간접적인 지원도 포함
- 재정 인센티브는 특정한 투자나 프로젝트에 대하여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sup>4)</sup>
  - 현금 보조금, 직업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인프라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 융자, 토지 임대 등을 통해 특정한 지역과 산업에 대한 접근 가능
  -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타깃팅(targeting)이 가능 : 지역개발 전략(낙후지역 개발, 재개발지역 개발), 국제무역 및 외국인 투자전략(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산업 육성(신성장산업,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등)

##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1) 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기업,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국내 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방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경우에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균특보조금)을 지원
  - 입지와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지역과 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을 다르게 하고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을 차등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은 지방이전 기업,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국내복귀 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지방이전 기업은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며, 국내복귀 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비수도권으로의

4) OECD(2003)에서 인용하여 재구성

이전도 포함

-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은 비수도권에서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기존의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됨.
-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에 해당

## 2) 지원내용

### □ 수도권 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 지방 이전

#### ○ 입지지원

- 입지보조금 : 산업단지 토지의 분양가액이나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나 임대료 일부 지원
- 지원비율은 9%에서 40%까지이며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됨.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입지투자금액의 30% 지원

#### ○ 설비투자 지원

- 설비투자보조금 :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 지원

[표 2-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요

구분 (국비 보조비율)		지방이전·국내복귀·개성 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비율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 기업	중소 기업	대기업	중견 기업	중소 기업
일반지역 (65%)	입지	-	10%	30%	-	-	-
	설비투자	6%	9%	12%	6%	9%	12%
수도권 인접지역 (45%)	입지	-	-	9%	-	-	-
	설비투자	4%	6%	9%	4%	6%	9%
지원우대지역 (75%)	입지	-	20%	40%	-	-	-
	설비투자	9%	17%	22%	9%	17%	22%
지원비율에 대한 특례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 국비 보조비율 5%p를 가산하여 지원 가능					
지원한도		이전 및 신·증설투자 기업 당 60억 원 한도 내 지원 (대규모 이전 시 70억 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3호를 조혜영(2014)에서 재인용

### 3) 지역별 보조금 지원규모 현황

- 2013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현황을 보면 총 1,060억원이 지급되었고 이전기업 492억원, 신증설기업 511억원, 복귀기업에 57억원으로 구성
  - 세종시에는 25.6억원이 지급되어 2.4%를 차지하며 이전기업에 지원

**[표 2-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현황(2013년도)**

(단위 : 억원, %)

구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계	25.6 (2.4)	78.2 (7.4)	56.7 (5.3)	17.4 (1.6)	-	96.8 (9.1)	111.6 (10.5)	100.0 (9.4)	135.9 (12.8)	26.1 (2.5)	185.0 (17.5)	165.3 (15.6)	35.8 (3.4)	25.6 (2.4)	1,060 (100.0)
이전	13.7	31.0	-	6.2	-	80.8	62.0	82.1	96.4	26.1	7.5	43.1	17.6	25.6	492.1
신증설	11.9	47.1	56.7	11.2	-	16.0	49.6	10.7	14.0	-	153.4	122.2	18.2	-	511.0
복귀	-	-	-	-	-	-	-	7.2	25.5	-	24.2	-	-	-	56.9

자료 : 조혜영(2014)에서 인용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종시에 투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사업)은 총 669억 원이며 이중에 시비는 167억 원(25%)
  - 투자금액은 총 3,951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556명

**[표 2-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현황(국비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투자금액	고용인원	보조금 지원액	비고 (지원년도)
1	2,670	37	729	2013
2	3,879	30	1,070	2013
3	6,620	37	1,404	2013
4	19,780	40	3,912	2014
5	6,000	20	1,230	2014
6	37,211	132	5,980	2014
7	37,207	339	7,500	2014
8	6,137	40	1,644	2014
9	7,336	45	1,812	2014
10	6,282	23	1,100	2015
11	6,918	32	1,077	2015
12	13,530	43	3,092	2015
13	11,600	30	2,100	2015
14	6,663	36	1,159	2015
15	8,647	25	1,482	2016

16	11,173	50	2,221	2016
17	96,100	224	8,000	2016
18	17,329	42	3,473	2016
19	29,390	60	5,600	2016
20	11,639	75	1,477	2017
21	6,984	101	1,815	2017
22	32,146	53	6,625	2017
23	9,887	42	2,402	2017
합계	395,128	1,556	66,904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시에 투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순시비사업)은 총 105억 원

- 투자금액은 총 1,098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462명

**[표 2-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현황(순시비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투자금액	고용인원	보조금 지원액	비고 (지원년도)
1	31,000	213	5,000	2014
2	31,506	94	2,181	2015
3	22,050	115	1,680	2015
4	13,699	20	1,000	2016
5	11,639	20	700	2016
합계	109,894	462	10,561	

#### 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과제

○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에 집중하고 예산규모의 확대와 지방의 자율성 강화(조혜영, 2014)

- 지역의 자립적 경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
- 지역의 전략산업, 특화산업, 집중유치업종 분야의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업의 수요와 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하여 임계규모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금 예산 확보

-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보조금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사용의 자율성 확대

○ 장·단기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지방투자 확대(조혜영, 2014)

- 단기에는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편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행정과 재정적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투자에 대한 매력도 제고
- 장기적으로는 인력확보, 인프라 구축, 협력업체 집적 등 투자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 3. 광역자치단체 국내기업유치 지원보조금

○ 광역자치단체들은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입지보조금(13곳), 시설보조금(12곳), 고용보조금(10곳), 교육훈련보조금(10곳)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종시는 국내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

[표 2-5] 광역자치단체 국내기업유치 지원보조금 유형

구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입지보조금	○	○	○	○		○	○		○	○	○	○	○	○	○	13
고용보조금		○	○	○	○	○			○	○			○	○	○	10
교육훈련보조금		○	○	○	○	○			○	○			○	○	○	10
시설보조금	○	○		○	○		○		○	○	○	○	○	○	○	12
본사이전보조금				○	○				○	○	○	○	○	○	○	9
공장이전보조금	○	○							○	○	○	○	○	○	○	9
연구소이전보조금									○	○	○	○				4
서비스업지원	○									○						2



컨설팅 보조금				○										○		2
기술이전 사업화지원					○											1
역외유출 방지지원					○											1
미래유망 산업지원														○		1
성과보상		○	○		○	○			○	○	○	○	○	○	○	11

자료: 박건영·라공우(2015) ‘강원지역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인용하여 수정

- 이외에도 본사이전, 공장이전, 연구소이전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지원(부산, 충북), 컨설팅보조금(광주, 경북), 기술이전사업화지원(대전), 역외유출방지지원(대전), 미래유망산업지원(전남) 등에도 차별적으로 운영

## 1) 대전광역시

### (1)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유치기업의 이전이나 신설·증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 지식서비스산업
  - 연구소 및 연수원
  - 기타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산업 및 건설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 일반적인 기업은 유치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기업(기타기업은 3년 이상)

-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금액이 100억원 초과(문화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투자금액 50억원 초과하거나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 10명 이상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

## (2) 지원방안 및 한도

### ○ 입지보조금 지원

-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연수원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 부지매입비용의 50%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지원
- 기업 당 50억원 이하

### ○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 유치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연수원 등을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경우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
- 최초 착공일 부터 3년 이내의 설비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의 10% 범위(문화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의 10% 범위)
- 기업 당 50억원 이하

### ○ 고용보조금 지원

- 유치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고용보조금 지원
-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채용하는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
- 기업 당 5억원

### ○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유치기업이 신규로 채용을 하여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채용하여 10일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의 교육훈련비용 중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
- 기업 당 5억원
- 본사이전 보조금 지원
  -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실질적 상시고용인원 30명 초과 시 1명당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
  - 기업 당 3억원 이하
- 임대보조금 지원
  - 연구소, 문화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조금 지원
  - 최초 임대차계약일부터 2년까지 기업 당 3억원 이하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 유치기업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내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비용의 20% 범위에서 지원
  - 기업 당 2억원 이하
- 창업기업 지원특례
  -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창업기업이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 입지보조금 지원: 유치한 창업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연수원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 부지매입비용의 50% 범위에서 지원
  -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유치한 창업기업이 최초 착공일부터 3년 이내의 설비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의 10% 범위에서 지원(문화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의 10% 범위에서 지원)

○ 기업 역외유출 방지지원

- 시구역의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기업의 시구역 외의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 보조금 지원의 비율과 범위 등은 제15조에 따른 기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준용

○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
-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이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기타 지원 사항

- (산업용지 지원) 유치기업이 공장건설 등을 위해 산업단지의 입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대부 가능
- (지방세 감면)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및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 (공유재산 지원) 이전기업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
- (금융지원) 유치기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 가능

## 2) 부산광역시

### (1) 지원대상 및 요건

-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에 대해 지원
  - 국내기업 :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수도권 소재 기업 :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기업
  - 국내복귀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
  -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부설연구소
  - 생산자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업종
- 일반적인 지원요건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고용인원 수 300명 이상

### (2) 지원방안 및 한도

- 입지보조금 지원
  - 수도권 소재 기업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용지의 분양가액·매입가액·임차료의 50%(100억원 한도)
  - 국내복귀기업 : 지역 안으로 신설·증설하는 국내복귀기업이 철수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고 국내복귀 후 신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용지의 분양가액·매입가액·임차료의 50%(5억원 한도)
  - 이전기업 :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용지의 분양가액·매입가액·임차료의 50%(50억원 한도)

○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 이전·신설·증설기업 : 지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거주용 제외),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투자액의 15% 범위(50억원 한도)
- 국내복귀기업 : 지역 안으로 신설·증설하는 국내복귀기업이 철수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고 국내복귀 후 신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거주용 제외),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설비투자액의 15% 범위(50억원 한도)

○ 생산자서비스업보조금 지원

- 지역 안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거나 지역 안에서 확장하는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1년분 건물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액의 50% 범위(2억원 한도)
-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시설·장비 설치비의 30% 범위(3억원 한도)
-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초과시 초과 1인당 100만원(1회)

○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보조금 지원

- 지역 안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거나 지역 안에서 확장하는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단, 10명 미만인 경우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건물 매입가액의 100분의 15 또는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범위(2억원 한도)
-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시설·장비설치비의 100분의 30범위(3억원 한도)

[표 2-6] 대전시, 부산시, 세종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구분	대전시	부산시	세종시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문화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연구소 및 연수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 국내복귀기업, 생산자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기업, 신규투자기업, 증설투자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창업기업</li> </ul>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상 사업 영위, 투자금액 100억원(특정산업의 경우 50억원 또는 상시고용 50명 이상 고용)</li> <li>-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민 10명 이상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고용인원 수 300명 이상</li> <li>-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li> <li>- 규제제로지역인 경우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li> <li>-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집단화 투자하는 경우</li> <li>- 첨단업종 관련 본사, 공장, 연구소</li> </ul>

[표 2-7] 대전시, 부산시, 세종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방안 및 지원한도

구분	대전시	부산시	세종시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이전 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30명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li> <li>-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용의 50%</li> <li>-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금액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10%(일부 업종 5억원)</li> <li>- 임대보조금 : 연구소, 문화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최초 2년간 50% 임대료 지원</li> <li>- 고용보조금 : 주민 상시고용 신규채용 1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6개월 범위에서 60만원</li> <li>- 교육훈련보조금 : 10일 이상 교육훈련 인원이 10명 초과 시 1명당 6개월 범위에서 60만원</li> <li>-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 20% 범위 내</li> <li>- 창업기업 지원특례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창업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보조금 : 용지의 분양가액·매입가액·임차료의 50%</li> <li>- 설비투자보조금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15%</li> <li>- 생산자서비스업보조금 :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1년분 건물임차료 50%, 시설·장비 설치비 30%, 상시고용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 1인당 1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보조금 :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 매입액 또는 임대료의 50% 이내, 10년 이내</li> <li>-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 이내</li> </ul>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 50억원</li> <li>-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 5억원</li> <li>- 본사이전 보조금, 임대보조금 : 3억원</li> <li>- 기술이전·사업화 보조금 : 2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보조금 : 5억~100억원</li> <li>- 설비투자보조금 : 50억원</li> <li>- 생산자서비스업보조금 : 2억~3억원</li> <li>-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보조금 : 2억~3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 50억원, 총합 80억원</li> </ul>



#### 4. 세종시 투자유치 관련 현황

- 세종시 사업체수 추이를 보면 2013년 7,468개에서 2015년 10,480개로 3,012개가 증가
  - 일반서비스 분야는 1,833개 증가, 지식서비스 분야는 658개가 증가, 제조업 187개, 건설업 169개, 운수업 160개 증가
  - 지식서비스 분야에서는 교육 서비스업 204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81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109개가 증가
  - 일반서비스 분야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 711개, 도매 및 소매업 564개, 부동산업 및 임대업 336개 증가

[표 2-8] 세종시 사업체수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전체 산업		7,468	9,124	10,480
농업, 임업 및 어업		6	5	8
광업		7	10	10
제조업		761	892	948
건설업		375	539	544
운수업		564	642	724
지식서비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0	58	6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9	212	24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9	115	145
	교육 서비스업	280	350	48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63	319	4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	227	282
	소계	1,011	1,281	1,669
일반서비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	6	6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6	36	38
	도매 및 소매업	1,613	1,952	2,177
	숙박 및 음식점업	1,664	2,010	2,375
	금융 및 보험업	97	107	119
	부동산업 및 임대업	450	709	78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7	75	8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30	860	990
	소계	4,744	5,755	6,577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세종시 종사자수 추이를 보면 2013년 56,867명에서 2015년 83,764명으로 26,897명이 증가

- 일반서비스 분야는 12,188명 증가, 지식서비스 분야는 11,734명 증가, 건설업 2024명, 제조업 757명 증가
- 지식서비스 분야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4,024명, 교육 서비스업 3,373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632명 증가
- 일반서비스 분야에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638명, 숙박 및 음식점업 3,223명, 도매 및 소매업 2,068명 564개,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31명 증가

**[표 2-9] 세종시 종사자수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전체 산업		56,867	70,661	83,764
농업, 임업 및 어업		69	49	92
광업		109	142	135
제조업		17,809	18,004	18,566
건설업		2,555	4,092	4,579
운수업		2,067	2,278	2,212
지식서비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46	879	1,08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9	3,675	4,75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53	1,331	2,550
	교육 서비스업	4,370	5,842	7,74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511	3,023	4,14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88	919	1,161
	소계	9,697	15,669	21,431
일반서비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12	223	216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26	358	348
	도매 및 소매업	4,100	5,059	6,168
	숙박 및 음식점업	4,284	5,733	7,507
	금융 및 보험업	855	861	1,16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17	2,183	2,84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488	13,925	16,12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79	2,085	2,373
	소계	24,561	30,427	36,749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세종시 공장등록 추이를 보면 2014년 725개에서 2017년 9월 현재 791개로 66개가 증가함.

- 전자전기기계장비 분야에서 29개가 증가하였고, 자동차운송장비 분야에서 13개, 펄프종이·인쇄기록,코크스 및 화학·의약, 플라스틱 및 비금속 분야에서 각각 5개가 증가

**[표 2-10] 세종시 공장등록 추이(2014년~2017년)**

구분	2014	2015	2016	2017.9
공장등록수	725	750	757	791
식료,음료, 담배	122	130	122	123
섬유, 의복, 가죽신발	23	22	22	22
목재나무	25	24	23	25
펄프종이, 인쇄기록	45	51	52	52
코크스및화학,의약	90	93	92	95
플라스틱및비금속	122	125	129	127
금속조립	88	92	91	97
전자전기기계장비	140	140	151	169
자동차운송장비	34	34	40	46
가구 및 기타	36	39	35	35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 신설법인 추이를 보면 2014년 302개에서 2017년 9월 현재 43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표 2-11] 전국 및 세종시 신설법인 추이(2013년~2017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9
전국	75,574	84,697	93,768	96,155	74,598
세종	302	344	415	504	430

자료 : 통계청, 지역별 신설법인수

○ 세종시 산업단지 분양 현황을 보면 전체 14개 단지의 미분양율은 3.6%

**[표 2-12] 세종시 산업단지 분양 현황(2017년 9월)**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별면적에 대한 산업단지 분양 현황			
				분양공고 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율
계	14	7,833,137	5,713,804	5,083,821	4,889,515	194,306	3.8
국가	-	-	-	-	-	-	-
일반	9	6,522,853	4,702,988	4,551,577	4,388,684	162,893	3.6
도시첨단	1	751,533	570,168	91,596	60,183	31,413	34.3
농공	4	558,751	440,648	440,648	440,648	0	0.0

자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 일반산업단지 중에서는 세종미래일반산업단지의 미분양율이 40.3%, 도시첨단산업단지 미분양율은 34.3%

**[표 2-13] 세종시 산업단지별 분양 현황(2017년 9월)**

단지명	유형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별면적에 대한 산업단지 분양 현황			
				분양공고 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율
조치원일반 산업단지	일반	940,452	786,633	786,633	786,633	0	0.0
부강일반산업 단지[구:부용]	일반	565,140	398,524	398,524	398,524	0	0.0
소정일반 산업단지	일반	270,959	191,327	191,327	191,327	0	0.0
전의일반 산업단지	일반	480,725	351,246	351,246	351,246	0	0.0
월산일반 산업단지	일반	1,380,320	964,950	964,950	964,950	0	0.0
전의2일반 산업단지	일반	866,505	599,089	599,089	599,089	0	0.0
명학일반 산업단지	일반	838,248	573,137	573,137	573,137	0	0.0
세종첨단일반 산업단지	일반	643,634	433,777	282,366	282,366	0	0.0
세종미래일반 산업단지	일반	536,870	404,305	404,305	241,412	162,893	40.3

행정중심복합 도시4-2생활 권도시첨단산 업단지	도시 첨단	751,533	570,168	91,596	60,183	31,413	34.3
노장농공단지	농공	162,221	135,750	135,750	135,750	0	0.0
부용농공단지	농공	202,896	148,022	148,022	148,022	0	0.0
청송농공단지	농공	84,315	64,037	64,037	64,037	0	0.0
응암농공단지	농공	109,319	92,839	92,839	92,839	0	0.0

자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 세종시 공장등록 추이를 보면 2014년 725개에서 2017년 9월 현재 791개로 66개가 증가함.

## 5. 세종시 투자진흥기금 개요 및 현황

### 1) 투자진흥기금 개요

#### (1) 국내기업 투자지원

- 투자진흥기금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국내이전기업, 신규투자기업, 창업기업, 대규모투자기업
  - 국내 이전기업 :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기업, 규제제로지역 안 1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본사/공장/연구소,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집단화 투자, 첨단 업종 관련 본사/공장/연구소, 투자유치위원회 결정 기업
  - 신규 투자기업 : 투자금액 100억 원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기업, 첨단 업종 관련 본사/공장/연구소, 투자유치위원회 결정 기업
  - 대규모 투자기업 : 투자금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규제제로지역 안 5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기업
  - 창업기업 : 투자금액 200억 원 또는 상시고용인원 60명 이상 기업

- 지원내용을 보면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음.
-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액/임대료의 50% 이내로 지급하며, 임대료 차액지원은 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설비투자보조금은 설비투자금액이 총 10억 원 초과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로 지급

**[표 2-14] 세종시 투자진흥기금 지원 조건 및 내용**

구분	국내 이전기업	신규 투자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창업기업
경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이상 경영</li> </ul>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금액 100억원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li> <li>• 규제제로지역 안 1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본사, 공장, 연구소</li> <li>•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집단화 투자</li> <li>• 첨단 업종 관련 본사, 공장, 연구소</li> <li>• 투자유치위원회 결정 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금액 100억원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li> <li>• 첨단 업종 관련 본사, 공장, 연구소</li> <li>• 투자유치위원회 결정 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li> <li>• 규제제로지역 안 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미만 기업인 경우 투자금액 200억원 또는 상시고용인원 60명 이상</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 토지분양가액, 임대료의 50% 이내(10년 이내)</li> <li>- (투자) 10억원 초과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li> </ul>			
지원한도	50억원	50억원	별도방침결정	30억원

##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 ① 지방세 감면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다른 외국인투자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② 입지보조금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료 또는 토지매입금액(분양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50% 범위에서 지원

### ③ 고용보조금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 지급
  -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2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할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20명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
  - 고용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때에는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지원
  - 고용보조금은 기업 당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

### ④ 교육훈련보조금

-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
  - 고용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때에는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지원

- 고용보조금은 기업 당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

#### ⑤ 시설보조금

- 공장시설 신축 등을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

- 지원대상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비,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 기자재의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 지원한도 : 총액의 50% 범위

#### ⑥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가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 외국인학교 시설의 규모, 학급,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50% 범위에서 지원

## 2) 투자진흥기금 운영 현황

- 현재 투자진흥기금 조성규모는 365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50억 원, 기금운용 수익금 13억 원, SPC 출자 2억 원으로 구성

- 2013년에 90억 원, 2014년에 10억 원, 2015년에 200억 원, 2016년에 50억 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총 350억원)

- 기금운용 수익금(이자 등 수입) 13억 원

- 2014년 첨단산업단지 SPC 출자에 2억 원 지출



- 2016년 신규 산단(미래, 첨단, 명학) 입주기업에 태양광발전저리융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신청기업 저조
- 미래·첨단산업단지 중 1곳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공공기관·기업 집적단지 조성 등으로 활용 예정
  - 토지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제약사항에 대한 분석 필요

## 6. 사례 분석

### □ 부산광역시

- 부산시의 경우 최초 투자진흥기금 조성의 목적은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매입을 고려하여 조성
- 그러나 현재까지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진 것은 없으며,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이 1건
- 산업부에서 진행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수혜 대상이 수도권 이전기업에 한정되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타시도 이전기업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2016년의 경우 3개의 기업에 각각 10억 원을 지원하여 총 30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 현재 1개의 기업에 10억 원 지원
- 용자의 경우 2012년과 2013년에 1건, 이차차액보전의 경우 2013년에 1건

## □ 대전광역시

- 대전시는 최근 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확대
-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 투자액 기준을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문화산업·지식서비스산업·창업기업·연구소기업은 5억원
- 설비투자보조금 비율 상향
  - 10억원 초과액의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금 지원한도도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조정
- 고용보조금과 임대보조금 확대
  - 고용보조금은 월 60만원 6개월에서 월 100만원 1년으로 확대
  - 임대보조금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안정적 지원예산 확충
  - 예산 규모를 2017년 20억원에서 2018년 50억원으로 확충



자료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그림 2-1] 대전시 기업유치 보조금 변경 내용

## □ 김천시

- 김천시의 경우 2011년에 투자유치지원금 8억 원 현대모비스에 지원하고, 유치기업 기반시설에 18백만 원 지원
- 2012년에는 투자유치지원금으로 현대모비스에 9.3억 원, KCC에 8.5억 원 지원하였고 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으로 2.9억 원을 LIC넥스원 오수관 공사에 지원함.

## 7. 분석 결과

### 1) 광역자치단체 기업유치 보조금 비교

#### □ 투자진흥기금 지원조건 완화 필요

- 일반적인 지원기준이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으로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어 완화 필요(규제제로지역은 총투자 20억 원 또는 상시고용 20명)
  - 최근 대전시는 투자액 기준을 1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문화산업·지식서비스산업·창업기업·연구소기업은 총투자 5억원으로 하향 조정

#### □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신설 추진

- 타 지자체의 경우 입지보조금(13곳), 시설보조금(12곳), 고용보조금(10곳), 교육훈련보조금(10곳)을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업지원, 컨설팅보조금, 기술이전사업화, 역외유출방지, 미래유망산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
  - 세종시는 국내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은 지원하고 있으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조항 부재

## 2)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 국내기업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초점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구성을 보면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상세하게 기술
  -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조건 완화

- 3년 미만 창업기업의 경우 투자액 200억원 또는 상시고용인원 6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
  - 창업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조건 대폭 완화 검토

###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보면 이전기업, 신규투자기업, 증설투자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창업기업,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규정
  -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3) 투자진흥기금 운영

### 세종시 투자진흥기금은 조성 중인 단계

- 투자진흥기금은 현재 조성 중인 단계여서 활용도는 낮지만 향후 발생할 기업의 입지수요를 대비할 필요
  - 투자진흥기금 활용 현황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난 4년간 기금이 사용된 곳은 첨단산업단지 SPC 출자에 2억 원 사용됨.
  - 투자진흥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산업입지를 수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낮은 것으로 평가

- 2016년 신규 산단 입주기업에 태양광발전저리용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청기업 저조하여 활용되지 못함.

- 기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의 실행력 제고 필요

다른 보조금을 통한 기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앙정부와 세종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투자진흥기금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중복성이 있는 부분 중에서 국비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틈새시장을 공략



## 3장

# 세종시 투자진흥기금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전략
3. 제안사업





# 3장 세종시 투자진흥기금 활성화 방안

## 1. 기본방향<sup>5)</sup>

### □ 투자진흥기금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진흥기금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진흥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비용 대비 편익을 확대

### 1)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 (1) 협상에 의한 맞춤형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 제공

- 협상을 통한 프로젝트별 차등 인센티브 부여
  -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투자의 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하여 투자 프로젝트별로 심사와 분석 및 평가를 거쳐 협상을 통해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
  - 프로젝트의 질적 평가를 위해서는 직업의 숙련도, 지역경제 기여도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
- 기업 특성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된 단순 인센티브 보다 기업의 수요에 맞춘 패키지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과 제고
  -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기업이 있고,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필요
  -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

---

5) 박재곤(2010)

## (2) 유사한 인센티브에 대한 종합적 고려

- 기업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지원 유도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고용보조금, 지자체가 제공하는 중소기업지원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 지원 인센티브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 제고
  - 투자진흥기금의 지급 대상, 지급 방식, 프로젝트의 평가 등에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적용 가능

## 2)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 (1) 단계적인 입지보조금 축소

- 입지보조금에서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토지는 단기에는 매입을 위한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
  - 토지나 건물의 구입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투자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개발과 같은 위험이 높은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확대
  - 다만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합

### (2) 지원금액 대비 효과에 대한 사후 평가

- 투자진흥기금 지원 대비 성과를 평가하여 기금 개선 방안 수립에 활용
  - 투자진흥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고용창출, 소득증대, 지역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고 기금 운영의 개선 방안 마련

## 2. 세부전략

### 세종시 미래산업 입지 여건 조성

- 세종시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성장잠재 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집적할 수 있는 공간 선점
  - 성장 가능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지식서비스 분야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투자진흥기금 대상의 확대

- 기업이나 기관들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확대 방안 검토
  - 현재는 이전기업, 신규투자기업, 증설 투자기업(3년 이상 제조업),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해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검토 필요

###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진흥기금 지원대상 조건 완화

-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금의 지원대상의 조건을 완화
  -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투자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을 창업기업에 까지 확장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조건 완화

### 기업의 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중앙부처 지원사업 보완)

- 지역 기업의 인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 강화
  - 지역 정보통신 업체의 경우 경력이 있는 개발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신규 인력의 경우 교육훈련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에 대한 신설 검토

###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홍보 강화

- 기업들이 투자진흥기금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홍보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3. 제안사업

#### 1)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

##### □ 사업개요

- 창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세종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반 인프라 확보 필요
  - 저성장과 기술발전으로 창업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세종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반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함.

##### □ 사업내용

-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확보
  - 공공행정 분야와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세종시는 향후 서비스와 과학기술 분야의 창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과 융합된 창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신도심 지역에 토지를 확보하여 창업보육 시설, 사업화 공간을 마련하여 벤처기업들이 집적할 수 있는 공간을 선제적으로 확보
  -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신도심 또는 읍면지역에 벤처창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추진 (신도심의 경우 5,000평의 토지매입을 위해서는 125억 원 정도의 예산 투입 예상)
- 벤처창업투자 펀드 조성
  -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벤처캐피탈, 은행, 증권사 등과의 공동투자펀드 조성 검토
- 청년창업 지원
  -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을 높이기 위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확대

##### □ 기대효과

-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벤처창업에 대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과 청년들에 대한 투자로 세종시 창업생태계 육성 지원

## 2)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 사업개요

-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세종시 산업단지 내에 외국인투자지역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 외국인투자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여 투자기업을 유치하는데 활용하는 것도 가능

### □ 사업내용

- (위치) 미래산단, 첨단산단 등 산업단지 내
- (면적) 부지 99,000㎡
- (예산) 110억~200억원(미래산단 3만평 기준 113억 소요)
- (공급) 분양형, 임대형
- (내용)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외국계 기업의 투자유치 기반 마련
  - 외국인투자지역은 투자요건에 따라 개별형 또는 단지형으로 지정
  - 개별형은 제조업 3천만불 이상 대규모투자, 단지형은 중소기업 2~3개사 입지 가능
  - 단지형 외투지역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국비 60%, 시비 40%)

### □ 기대효과

- 외국계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외투지역을 조성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활동 가능

## 3) 공공기관·기업 집적단지


### □ 사업개요

- 투자진흥기금을 활용, 행복도시 내 부지를 매입하여 집적단지를 조성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사무공간으로 분양 또는 임대

- 강당, 회의실, 휴게실, 헬스장, 주차장 등은 입주기관 공동 사용

## □ 사업내용

- (위치) 행복도시 4-2생활권 테크밸리 리서치파크\* (부지 122,221㎡)
  - \* 행복청에서 진행한 「세종테크밸리 투자유치활동 위탁연구」 용역 (' 17.1~8) 활용
- (면적) 부지 33,000㎡ / 건물 연면적 9,900㎡
- (예산) 370억원 (부지 250, 건축 120)
- (공급) 분양형, 임대형
- (내용) 단지를 조성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에 저렴하게 공급
  -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첨단 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입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입주업체 수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편의 시설 제공
  - 핵심주력산업 및 성장유망산업 관련 연구소와 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공간, 입주기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및 지원시설 등 고밀화된 복합 업무공간 제공

공공기관 · 기업 집적단지 이미지(안)	공간구성 및 시설내용(안)
	 <p>5F~10F 업무시설(5,940m<sup>2</sup>)</p> <p>사무실(5,940m<sup>2</sup>)</p> <p>3F~4F 공동이용시설(1,980m<sup>2</sup>)</p> <p>기업지원센터(2,970m<sup>2</sup>) 회의실 및 휴게실(495m<sup>2</sup>) 관리실(495m<sup>2</sup>)</p> <p>1F~2F 지원시설(1,980m<sup>2</sup>)</p> <p>편의점, 은행, 식당, 매점 등</p>

[그림 3-1] 공공기관 · 기업 집적단지 이미지 및 공간구상

추진계획(안)

- 관계기관 협의( '17.12) → 타당성 용역( '18.1) → 시의회 동의( '18.7)  
→ 부지매입 및 건축( '19.1) → 공공기관 유치 및 입주(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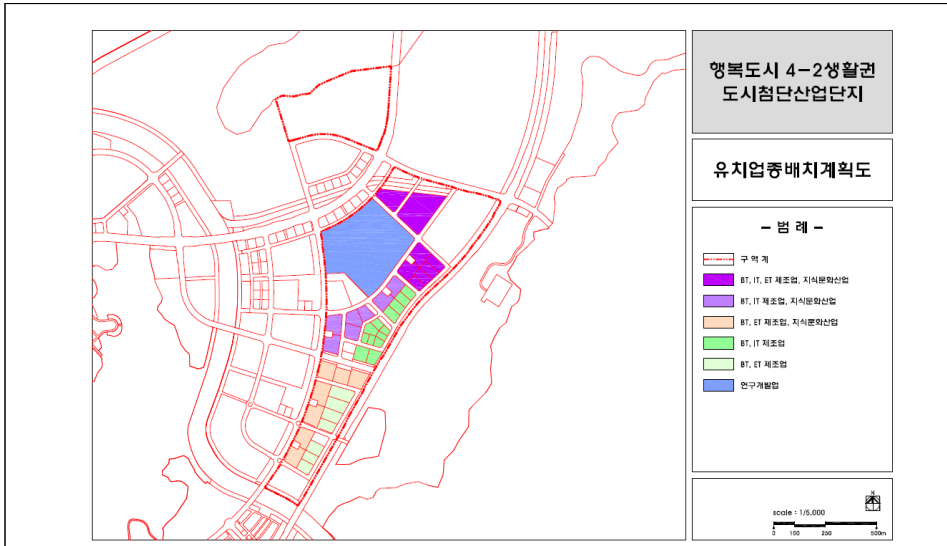
소요예산 및 관련기관

- (토지매입) 투자진흥기금 : 250억원 (1만평 × 250만원)
- (건축비) 일반회계 : 120억원 (3천평 × 400만원)
- (관련기관) 국토부, 행복청, LH

기대효과

-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들이 집적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통한시너지 창출 및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 업종별 배치계획



□ 위치도



[그림 3-2] 도시첨단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 및 위치도



#### 4) 투자진흥기금 지원대상의 확대

##### 사업개요

- 현재 투자진흥기금 지원조건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현재는 국내기업의 경우 투자금액 100억원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움.

##### 사업내용

-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대상 기업의 폭을 확대
  - 지원대상 조건을 투자금액 50억원 또는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으로 완화

##### 기대효과

- 투자진흥기금 신청 조건 완화로 대상기업의 폭을 확대하여 신청 가능성을 확장

#### 5)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 완화

##### 사업개요

-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조건 완화 방안 검토
  - 현재 투자진흥기금 지원대상에 창업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원조건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완화 필요

##### 사업내용

-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조건을 낮추도록 투자진흥기금 조례 개정
  - (당초) 투자금액 200억원 또는 상시고용인원 60명 이상
  - (변경) 투자금액 30억원 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으로 완화

##### 기대효과

-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조건 완화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 6) 인력 훈련 및 고용 지원 확대

###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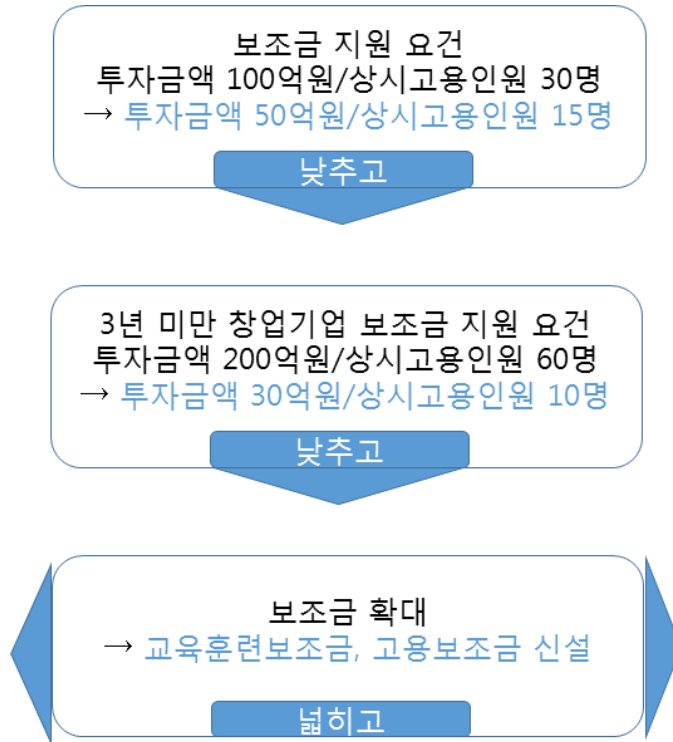
- 지역 기업의 인력 훈련과 채용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 강화
  - 인력 훈련과 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

### □ 사업내용

- 지역 기업의 인력 훈련과 채용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 강화
  - 지역 기업(지식서비스 분야 특히 IT분야)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훈련과 채용 지원 확대
  - 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100만원 12개월, 기업당 6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1인당 100만원 24개월, 기업당 12억원 한도

### □ 기대효과

- 인력 훈련과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그림 3-3] 세종시 투자진흥기금 개선 방안

## 7) 투자진흥기금 수요조사와 홍보 확대

### 사업개요

- 기업들이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
  - 기업들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요 파악
  - 신규투자, 이전, 증설계획이 있는 기업들과 기존에 입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

### 사업내용

- 기업체 수요조사 진행

- 기업체들이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부분은 어떤 것인지 조사하고 활용 방안을 도출

○ 찾아가는 투자진흥기금 기업 홍보

- 기업체 방문을 통한 투자진흥기금 홍보
- 투자진흥기금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기업들에게 발송하고, 각종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활용

□ 기대효과

- 기업체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기금의 활용방안을 재구성하여 활용도를 제고
- 홍보 책자 발간, 방문 홍보를 통해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인식도 제고

## 4장

###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적 제언



# 4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론

### □ 세종시 투자진흥기금의 현황

- 세종시 투자진흥기금은 2013년에 조성되어 현재 365억 원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조성중인 단계에 있어서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적극적인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2014년에 첨단산업단지 SPC출자에 2억 원이 지출
- 구체적인 지원조건에 있어서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조건이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며, 지원분야도 한정적이어서 확대 필요
  - 국내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지원조건이 100억 원 또는 상시고용 30명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고,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지 않음.

### □ 투자진흥기금 활용도가 낮은 것에 대한 원인

-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낮은 것으로 분석
  - 예를 들면 2016년 신규 산단 입주기업에 태양광발전저리용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청기업 저조하여 활용되지 못함.
- 다른 보조금을 통한 기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부와 세종시에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순수 시비를 통한 기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진흥기금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

### □ 투자진흥기금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진흥기금을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활용되도록 유도
  - 투자에 대한 양적인 측면과 함께 질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프로젝트별로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춘 패키지

지 형태로 제공

- 유사한 인센티브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함께 일관성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진흥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비용 대비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 입지보조금에서 토지매입비를 축소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
- 투자진흥기금을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

○ 단계별 계획을 통해 투자진흥기금의 활용성을 제고

- 단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수요를 반영한 토지 매입과 유치지역 구성에 맞는 투자유치 견인이 필요하며, 투자유치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투자유치 정책 추진
-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고용과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투자진흥기금 활성화 방안

○ 기금조성의 주요한 목적인 세종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미래 투자수요를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 측면에서 활용도를 높여야 함.

- 향후에 발생할 외국인 투자와 공공기관 및 기업 수요, 벤처창업에 대한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기반 마련 필요
- 기금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분야를 확대하여 기금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사업을 구상하여 기업수요 맞춤형 사업 전개 필요

## 2. 정책적 제언

#### 미래 산업입지 수요에 대비한 선제적 기반 조성

○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벤처창업단지, 창업투자기금, 청년창업 지원 등을 통해 창업생태계



## 기반 마련

-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여 외국계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 지원
  - 산업단지 내에 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외국계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
- 세종시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성장잠재 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집적할 수 있는 공간 선점
  - 성장 가능한 지역의 토지를 선점하여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 검토
  - 현재는 이전기업, 신규투자기업, 증설 투자기업(3년 이상 제조업),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해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검토 필요
-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금의 지원대상의 조건을 완화
  - 투자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이 이전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원조건 완화 필요

## □ 기업의 인력 고용과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역 기업의 인력 고용과 교육훈련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 강화
  -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설하여 중앙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 지원

## □ 기업수요 파악과 투자진흥기금 홍보 강화

- 기업들의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업들이 투자진흥기금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홍보서비스 등 기금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참고문헌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 박건영·라공우(2015), 강원지역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1호, 115-134
- 박재곤(2010),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개선방안, 산업연구원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조혜영(2014),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 UNCTAD(2004), Incentives,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Publication
- OECD(2003), Policies toward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Paris

## 부록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정) 2013.01.07 조례 제285호

(일부개정) 2015.09.30 조례 제723호

(일부개정) 2016.03.14 조례 제819호

(일부개정) 2017.07.20 조례 제1032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등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설운영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 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을 말한다.
5.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삭제, 2016. 3. 14.)
7. “유치”라 함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투자촉진을 위하여 시 관할 구역에 투자하는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8.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라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9.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0.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11. “설비투자 보조금”이란 제25조 및 제26조의 국내기업 등이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을 말한다)부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투자하는 건축비(매입·임차비용을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한다),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 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13.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14. “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5. “집단지 투자”라 함은 3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투자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서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6. “국내 이전기업 지원”이라 함은 제25조의 국내기업이 시외의 지역에서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7. “신규 투자기업 지원”이라 함은 제26조의 국내기업이 시내에 투자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4조(외국인투자진흥관)** 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진흥관을 둔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이 겸임하거나,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외국인투자진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 제5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기업 활동 규제제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및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투자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과 시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학계, 경제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후단 신설, 2017. 7. 20.)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3. 14.)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5조의2제3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 3. 14.)

**제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6. 3. 14.)

**제5조의5(위원회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3. 14.)

### 제3장 투자진흥기금

**제6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보조금 및 차입금 등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위원회가 겸한다.

③ (삭제, 2016. 3. 14.)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 7. 20.)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기금의 관리·운동)**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동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이다.

②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3. 14.)

## 제4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입지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고용보조금)** 시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의 신축 등을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가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그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거나 토지 등을 임대할 때의 임대

로 감면율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0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및 제17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해 현금을 지원할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1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도로·용수·전력시설 등 투자기업 사업에 필요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외국인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일괄민원 처리 등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장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제23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라 시의 사회기반시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우대조치)** 시장은 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장 국내기업 등에 대한 투자 지원

**제25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시장은 시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내기업이 시내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2(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기존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3. 14.)

**제2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내 대규모 투자기업 등을 시내로 유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9.30)



## 제7장 사후관리

**제2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계획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조금의 지원 취소 및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외국인 투자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상계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장 보칙

**제31조(민간기관 등과의 파견 및 교류 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 및 교류 근무자에 대하여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포상금 등)**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준의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및 포상금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723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조례 제819호, 2016.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제6조의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2”로 한다.

## **부 칙(조례 제1032호, 2017. 7.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유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록 2.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보조금 지원기준>

구분 (항목)	지원대상	지원업종	지원규모	지원한도
입지 보조금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 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이 공장이 나 분사 또는 연구소를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령」 제29조제3항 및 제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시행 제60 차료의 100분의 50 범위	100억원
	지역 안으로 신설·증설하는 국내복 귀기업이 철수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 사업장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고 국 내복귀 후 신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령」 제29조제3항 및 제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시행 제60 차료의 100분의 50 범위	5억원
설비 투자 보조금	지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 는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 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령」 제29조제3항 및 제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용지(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까지 포함)의 분양가액·매입가액·임 차료의 100분의 50 범위	50억원
	지역 안으로 신설·증설하는 국내복귀 기업이 철수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 업장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고 국내 복귀 후 신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령」 제29조제3항 및 제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거주 용 제외),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 설 설치비 등이 10억원을 초과한 경 우 투자액의 100분의 15 범위	50억원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거주 용 제외),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 설 설치비 등 설비투자액의 100분 의 15 범위	50억원

구분 (항목)	지원대상	지원업종	지원규모	지원한도
생산자 서비스업 보조금 <개정 2017. 5. 31>	지역 안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거나 시 역 안에서 확장하는 기업 중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 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과 사업지원 서 비스업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1년분 건 물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 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시설·장비 설치비의 100분의 30 범위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신규채 용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초과시 초 과 1인당 100만원(1회)	2억원 3억원
	지역 안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거나 시 역 안에서 확장하는 기업 중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단, 10명 미만 인 경우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조례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업종<개정 2017. 5. 31>	이전 또는 확장하는 단, 신규고용인 기업의 건물 매입가 원 수에 따라 보 액의 100분의 15 또는 보조금 지원금액 비 는 1년분 건물임차 율의 1%p ~ 료의 100분의 50범 5%p 가산하여 위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시설·장비설 치비의 100분의 30 범위	2억원
지식기반서 비스산업보 조금 <신설 2015. 11. 4>				